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1285

2023년 12월 19일 교 육 위 원 회

l 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10월 10일, 김동욱 의원

2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3일

3. 상정일자 :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(2023년 12월 19일 상정, 원안가결)

Ⅱ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동욱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 (일명 '민식이법')이 마련되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에서 여전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음.
-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에게 도로교통법, 보행자 교통안전 수 칙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교육안전 에 관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 안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교육안전 범위 중 교통안전에 보행자 통행 및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추가하고자 함. (안 제5조제4호)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10일 김동욱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285호로 발의되어 202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을 교통사고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 고에서 보행자 통행 및 보호까지 확장함으로써 학교 안팎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교육안전을 보다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안전 중 교통안전에 대한 범위를 '교통사고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'에 '보행자 통행 및 보호'를 추가하여 규정(안 제5조제4호)하고 있습니다.
- 지난 2020년 일명 민식이법(「도로교통법」, 「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)의 시행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 었고,
 - 이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 제한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, 통학로 보도 신설, 그리고 횡단보도 안전시설

물 확대 및 교통안전지도사 운영, 교통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
-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서울시,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, 학생들의 스쿨존과 횡단보도 등에서 보이고 있는 위험한 행동은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인식부재를 나타내고 있는 바¹), 이에 대한 조속한 교육이 절실한 상황입니다.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상 교통안전의 범위에 '보행자 통행 및 보호'를 추가한 것은 보행통행과 관련한 학생의 위험행동 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안전 사고위험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"의견없음"을 제출 하였습니다.(행정관리담당관-15379.,2023.10.27.)
- 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- V. 토론요지: 없음.
- Ⅵ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없음.
- Ⅲ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- Ⅷ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- IX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.

¹⁾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·고교생으로 추정되는 두 청소년이 스쿨존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사진이 올라옴. "'민식이법 놀이'?... 스쿨존·횡단보도 드러누운 10대들"(연합뉴스, 2023.8.29.)

[&]quot;스쿨존 30km 지키면 뭐하냐.. 기가 막힌 아이들 장난" (YTN, 2023.8.30.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4호 중 "교통사고 및"을 "교통사고,"로, "안전사고"를 "안전 사고, 보행자 통행 및 보호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교육안전의 범위) 이 조례	제5조(교육안전의 범위)
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는	
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교통안전 : 등하교시 또는 교	4
육활동 중의 <u>교통사고 및</u> 어	<u>교통사고,</u>
린이 통학버스 <u>안전사고</u> 와 관	<u>안전사고, 보행</u>
련된 안전	<u>자 통행 및 보호</u>
5. ~ 8. (생 략)	5. ~ 8. (현행과 같음)